

2022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제1차 회의록

일 시 : 2022. 1. 14.(금) 14:0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시·도지사 추천 접수(전년도)	○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
↓	
○ 관계전문가 검토(전년도)	○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
↓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매년 1월 31일까지)
↓	
○ 조사단 구성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
↓	
○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등) 및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 조사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 종목만 지정 시 :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시 : 인정 절차 진행 ※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
↓	
○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 종목 지정 관보 고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매년 1월 31일까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 신청서 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조사단 구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서면조사(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2단계 조사 결과 검토,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3단계) 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심층 기량조사(실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3단계 조사 결과 검토,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 인정서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div>

# 목 차

## 【검토사항】

1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	7
---	--	---

## 【보고사항】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보고	12
2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	13

검 토 사 항

## 1.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계획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에 실시 예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추진 배경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계획 수립 및 공지 예정('22.1월)
  - \* 관련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 2) 추진 방침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조사
  - 지방자치단체 신규 수요조사 추천 종목
  - 직권검토 종목
    - \* 국립무형유산원의 한국무형유산 종합조사 기초조사 및 심화연구 결과 토대로 대상 선정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
  - 2021년 인정조사 종목 중 미완료 종목
  - 보유자 부재 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10개년 계획 우선 고려
    - \* 공예기술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2021년 조사가 지연되어 순연하여 진행
  - (단체종목) 전승교육사 3명 이내, 인정조사 시기가 오래된 종목 우선 추진
    - \* 대규모 의례 및 대동놀이 종목 제외, 전승지원금 제한 단체 종목 제외, 보유단체 내 갈등 해소 단체 우선 추진
- 명예보유자 인정

-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조사계획과 별도로 수시 추진)

3) 세부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 검토】**

구 분		대 상
신규 종목	지자체 신청*(3종목)	생전예수재, 조선왕릉제향, 칠점선
지정 (7종목)	직권검토** (4종목)	심마니와 약초꾼의 습속,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업 공동체, 물때지식, 마을숲과 전통지식

\* 신규종목 지정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17개 시·도 의견 수렴('21.5~8월)

- 제출현황 : 2개 시도, 3종목 신청(서울 2, 전북 1)

\*\* 국립무형유산원 종합조사(심화연구) 결과 반영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 검토】**

구 분		대 상
전승자 인정 조사 (30종목)	보유자 (10종목)	(예능 4) <u>대금산조, 판소리(춘향가), 경기민요, 가곡</u> (기술 6) <u>궁시장(궁장), 궁시장(시장), 악기장(북제작), 나전장(끓음질), 나주의 셋골나이, 악기장(현악기)</u>
	전승교육사 (20종목)	(예능10) <u>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통영오광대, 구례향제줄풍류, 동래야류, 승전무, 선소리산타령, 남도들노래, 강강술래, 이리농악</u> (기술 4) <u>염장, 탕건장, 낙죽장, 금속활자장</u> (지식 6) <u>은산별신제, 강릉단오제, 위도띠뱃놀이, 동해안별신굿, 황해도평산소놀이, 양주소놀이</u>

\* 밑줄은 2021년 조사 진행이 미완료된 종목임

4) 참고 사항

- 신규종목 지정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17개 시·도 의견 수렴('21.5~8월)
  - 제출현황 : 2개 시도, 3종목 신청(서울 2, 전북 1)
  - 제출종목

시도	종목명	분야	지정여부	비고
서울	생전예수재	의식	서울무형문화재 (‘19 지정)	<전승단체> (사)생전예수재보존회 * 단양구인사생전예수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20.4.10. 제3차 회의) - (부결)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 치 없음
	조선왕릉제향	의식	-	<전승단체> 전주이씨대동종약원 * 조선왕릉제향 종목 지정 검토 (‘15.12.18. 제7차 회의) - (부결) 복원된 의례의 역사적 준거가 불명확하여 학술성, 예술성 측면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미흡함
전북	칠집선	기술	전북 선자장 (‘93 지정)	전북 선자장 내 해당기술 포함 신청자 엄○○은 보유자(‘12 인정)
총계	3건			

- 지자체 수요조사 신청종목 관계전문가 서면검토(‘21.11~12월)
  - 검토방식 : 종목별 관계전문가 2명의 서면검토
  - 검토결과 : 붙임참조

#### 라. 검토할 사항

-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 조사 대상종목 검토

붙임 : 2022년도 신규종목 지정조사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 1부

[붙임]

2022년 신규종목 지정조사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

- 검토기간 : 2021.11월~12월
- 검토대상 : 시·도 신청 3종목(서울 2, 전북 1)
- 관계전문가 : 종목별 2명

종목명	분야	검토의견	비고
생전예수재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종단별로 다양하게 분포, 전승되어 보편성을 지님. 특정 사찰중심의 지정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거가 됨.</li> <li>○생전예수재의 차이는 세부 재차나 작법과 범패의 활용의 차이는 있지만 의례 본질의 차이는 아님. 따라서 종목 자체에만 주목하면 됨.</li> <li>○현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 불교의례가 서울과 영남 중심으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전례를 따른다면 각 지역 전승 생전예수재를 지역성을 주요하게 평가하는 시도무형문화재 중심의 정책이 타당함.</li> <li>○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성을 지니며, 민속적 가치도 높음</li> <li>○20C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16년부터 매년 개최함으로써 전승역량도 축적하고 있음. 학술대회 및 서적간행 등을 통해 생전예수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선양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도 돋보임.</li> <li>○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지정조사 대상을 추천함</li> </ul>	단양구인사 생전예수재 부결('20)
조선왕릉제향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0여년의 전승 역사를 가지고 현재 『대한예전』의 황제례를 근거하여 거행됨. 조선왕릉에서 진흥되는 유일한 전통 행사이면서 의례 공간으로서 왕릉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치가 있음. 다만, 왕릉에서 시행되는 의례는 황제례에 따라 복색은 마련하였지만, 제수와 홀기는 상당수 내용이 과거 조선시대 제후례가 그대로 시행되어 천자국과 제후국의 체제를 섞어 쓰는 문제가 있어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음.</li> <li>○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li> </ul>	부결('15)  황제국과 제후국 체제 혼용 문제
칠접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지정된 합죽선과 비교할 때 속살을 따내고 그 위에 옷칠을 하는 것 이외에 제작기술이 대부분 동일함.</li> <li>○합죽선이 고려시대 기원 이래 현재까지 애호되고, 전세되는 유물 또한 다수이며, '80년대 말까지 전주 등지에서 제작하는 장인이 집단을 이룰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반면, 칠접선은 조선 초기 제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기록이 보이나 이후 기록이 보이지 않음. 19세기 이후 제작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존 전세 유물도 극히 소수이며 합죽선보다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승계보의 신빙성도 희박함</li> <li>○지자체 제시 문헌근거의 부족 및 오류 등이 있음</li> <li>○지정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음</li> </ul>	전북 선자장 내 해당기술 포함  국가 무형문화재 선자장 지정('15)

보 고 사 항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보고

## 가. 보고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2차 5개년(2022~2026) 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나. 추진경과

-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1.1.~11월)
- 전문가 자문회의(‘21.4월/8월) / 정책토론회(‘21.6월)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안 수립(‘21.12월)

## 다. 주요내용

- 계획기간: 2022년~2026년 / 5개년
- 성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b>비전</b>	<b>함께 보전하여 모두가 누리는 무형문화재</b>		
<b>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 개인·단체에서 공동체로</li> <li>◆ [지원체계] 보편형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li> <li>◆ [지향가치] 보호·보전을 넘어 가치창출·대국민 향유로</li> </ul>		
<b>추진 전략</b>	<b>모두가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보전</b>	<b>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b>	<b>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b>
<b>핵심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지향적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마련</li> <li>• 무형유산 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확산</li> <li>• 지역 문화유산 보호기반 강화</li> <li>•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별·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li> <li>• 무형문화재 공개 및 교류기반 강화</li> <li>• 시대에 부응하는 전승체계 구축</li> <li>• 무형유산 산업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교육기반 강화</li> <li>• 무형유산 콘텐츠 및 향유기반 강화</li> <li>• 세계가 공감하는 K-무형유산</li> </ul>

붙임 :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별송)

## 2.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보유단체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 다. 보고내용

#### 1) 추진 배경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수립 및 공지 예정('22.1월, 청·유산원 홈페이지 등)  
\* 관련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2) 주요내용 :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

#### 가)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매월)

- 지원대상 :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 ○ 지급기준

- 보유자 : 월 1,500,000원
- 전승교육사 : 월 750,000원 \* 전년 대비 1인당 월 5만원(증)
- 보유단체
  - \* 보유단체 : 월 3,600,000원
  -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 월 5,500,000원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가 있는 경우보다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추가 지원. 단, 법인 미전환 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 (보유단체 2,900,000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 4,500,000원)

나) 전수장학금(매월)

- 지원대상 : 취약종목 보유자가 추천한 전수장학생  
 ※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추천, 선발 후 5년 지원
- 지급기준 : 월 275,000원

다) 전승활동 장려금 (연1회)

- 지원대상 : 연간 전승활동 실적 등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종목의 보유자·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
  - 전승활동 실적점검 기간 : '22. 1월 ~ '22. 10월 (평가일 : 12월 중)
  - 평가일 및 지급시기 : '22년 12월
- 지급기준 : 종목 특성 및 전승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분야	평가 사항
개인 종목	예능, 놀이, 무예	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등 *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
	기술, 생활관습	
단체 종목	예능	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③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
	놀이, 무예, 의식, 기술, 생활관습	

\* 코로나 상황 및 운용 여건상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21년부터 교육권한이 부여된 전승교육사 지급대상 포함

라) 취약종목 추가 지원금 (연 1회)

- 지원대상 : 전승취약종목 소속 보유자·전승교육사
  - 전승취약종목 (기준일: '20년 4월 35종목 선정, 3년 마다 재선정)

- 예능(5종목)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5종목)  
 - 기술(30종목) : 갓질,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셋골나이,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북제작, 편종·편경제작), 궁시장, 채상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입사장, 자수장, 바디장, 침선장, 전통장, 옹기장, 소반장, 금속활자장, 완초장, 누비장, 화각장, 윤도장, 염장, 금박장, 선자장, 낙화장.

- 지원방법 : 전승취약종목에 소속된 보유자·전승교육사가 전승활동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고 적합성 검토를 거쳐 지원 상한액까지 연 1회 연말 지원

- 전승활동 : 재료구입비용, 전시회·공연 개최비용 및 임차료 등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지원 상한액	4,716,000	3,132,000	3,132,000

\* 보유자·전승교육사가 부재한 전승취약종목의 경우, 이수자에게 지원

마) 특별지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매월 1,000,000원
- 장례위로금 : 명예보유자·보유자(1,200,000원), 전승교육사(600,000원)
- 입원위로금 : 보유자(500,000원), 전승교육사(300,000원)/10일 이상 입원 시, 연 1회

바)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

- 법적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1-3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 (무형원 훈령 제29호)
- 제한대상 :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등